

2023학년도 이동중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I. 목적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학교 안전관리 체계 및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를 구축, 경기 교육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한다.

1. 근거(관련 법령 등)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2. 비전과 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 시 대응 역량 강화
- 학교가 기획하고 학생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내실화
-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안전한 학교 실현

3. 학교안전 연방 분석

가. 학교안전위험성 진단(참고) 및 안전점검 결과 반영

- 학교 비상대책반 구성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 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 강구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발생시 대응 절차
- 2023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및 대책 반영

나. 2023년 주요 내용

과제	2023년
①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 발생 시 보고 체계 구축
②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의 「경기도안전교육과정」 개발·보급 - [국정과제] 유치원 누리과정에 51단위활동 반영 의무화 추진 - 청렴·생명존중·시민교육을 안전교육의 철학으로 반영
③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 지진, 미세먼지 대비, 대응 강화 · 내진보강 완료 시점 단축 추진 - 2030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로 기존계획 대비 5년 단축 추진
	· 학생위기지원단 구성·운영 - 학생 위기지원 실무협의회와 연계한 교육지원청 단위 조직 ·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사전방문등록을 통한 무단 출입자 관리 시범 운영
④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학교폭력 원인의 갈등과 분쟁 조정
	· 학교안전문화 진단도구 개발·보급 - 경기도 특색을 반영한 학교문화 진단 - 자체평가를 통한 학교의 자발적 안전문화 개선 노력 및 지원

다. 전략수립 (중점 추진과제 발굴)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2.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4.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II. 학교연왕

학교명	이동중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11111 경기 포천시 이동면 능바위1길 13				
전 화	031-532-4512	FAX	031-533-4199	홈페이지	www.idong.ms.kr
교 장	조성열		학교안전 책임관 (교감)	임래하	행정실장 심애정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합계		비고	
	학급수	학생수												
			2		2		2				5			
			32		32		20				84			
교직원 현황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		교육 공무직원		총계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기타
	남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3	11	0	2	0	10	5	23	0	0	사서채용예정	1
시설 현황	학교면적		연면적		교실수		실험실수		기숙사유무		강당 유무		기타	
	33,088㎡		4,485,000㎡		6		6		무		유			

【추진 과제별 담당자 지정】

7대 안전교육 중심 모형



【학교 위치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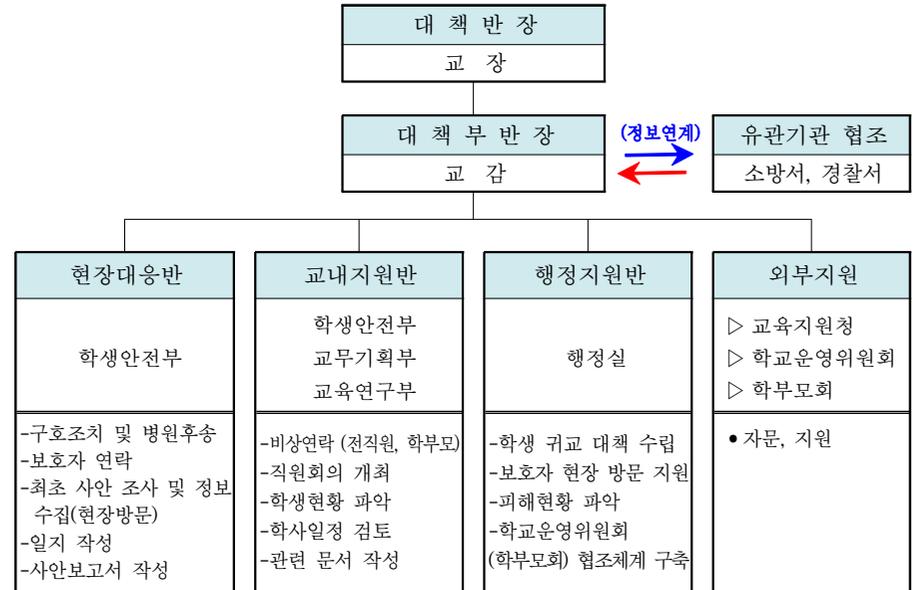


【비상시 대피도 작성】 -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부착



【학교 비상대책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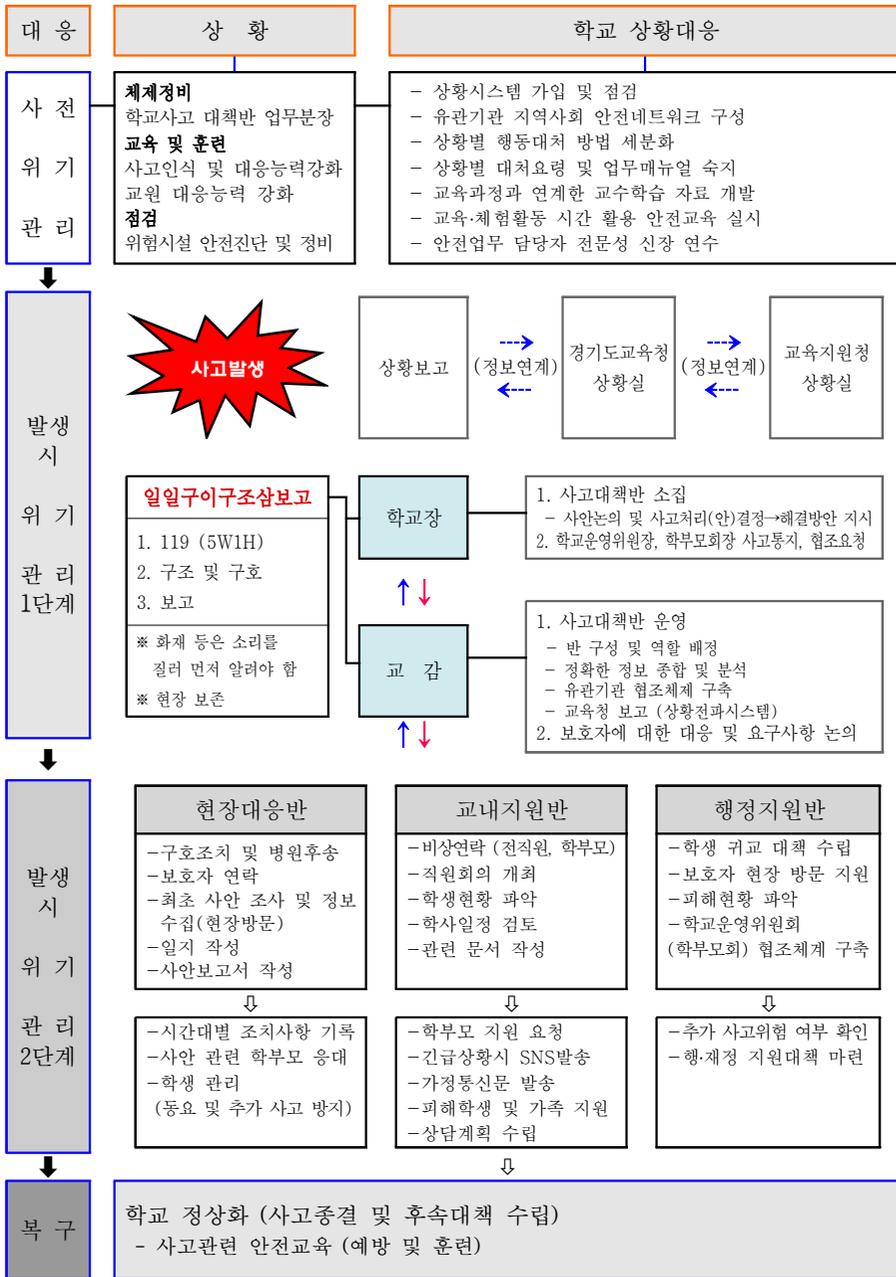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공동대응, 학교교육 조기 정상화
- 구성 : 교직원 및 대책자문기구 포함 적정인원 구성
- 학교 재난대응 및 구성원 임무



※ 반별 인원구성 및 임무는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재구성

○ 운영

- 자살 · 현장체험학습 · 학교 내 사고 등 학생사고 발생시 편성·운영
- 평시 상황발생 대비『사고대응 일이삼』슬로건 숙지
- 사고발생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현장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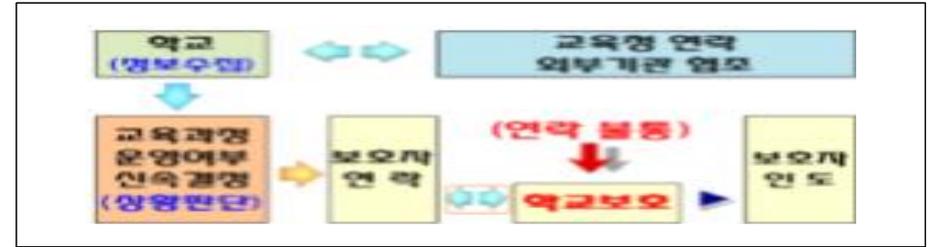


직책	임무	비고
최초발견자	- 일일구 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 (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로,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대응반	학생안전부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육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지원반	학생안전부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상담교사 (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지원반	행정실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정 지원
외부지원	협력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증제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사안대응 체크리스트(체험학습 기준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경 적용)

확인 내용	조치시간	확인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input type="checkbox"/>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input type="checkbox"/> 상황보고 - 학교장 보고, - 상급기관 보고			
<input type="checkbox"/>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언론 대응 (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input type="checkbox"/>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input type="checkbox"/>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안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input type="checkbox"/>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input type="checkbox"/> 교내지원반장 - 학생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input type="checkbox"/> 비상연락 - 전직원,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관련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input type="checkbox"/>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학생 귀교 대책 계획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발생 시 대응 절차



- *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학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학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재난대응 훈련 계획 시안】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체험형 민방위 대피 훈련	대규모 안전사고 예방 훈련	취약분야 안전 훈련 I	취약분야 안전 훈련 II	위기대응 시스템 점검 훈련
훈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기반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5분안전교육 활용하여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09:00 - 09:10 ◦ 장소 : 각 학급 ◦ 주제 : 수학여행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 훈련 •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민방공 대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13:30 - 14:15 ◦ 대상 : 전교생 및 교직원 ◦ 장소 : 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기반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15:20 - 16:05 ◦ 장소 : 체육관 ◦ 주제 : 안전규칙 만들기 •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체득하는 학생안전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체육교과시간 ◦ 장소 : 운동장 ◦ 주제 : 지진 발생에 따른 대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기반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5분안전교육 활용하여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09:00 - 09:10 ◦ 장소 : 각 학급 ◦ 주제 :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사고 수습 훈련, 식중독 사고 예방, 토론품 감염병 사고 예방 토론 • 학교장 주제 자체 점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1교시 ◦ 참석 : 부장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상황보고체계 점검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관련 모의 상황 가정하여 대비 - 안전담당자 상시 대기 •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체득하는 학생안전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과학교과시간 ◦ 장소 : 실험실 ◦ 주제 : 실험실 화재 대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기간 일제 자체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소 제거 • 불시가능점검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체계 점검 - 안전 관련 기구 점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훈련시 교장, 담임교사의 유고를 가정한 학생 중심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재난대응훈련에 앞서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학부모의견을 반영 				

■ 교직원,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생략)

■ 지역 재난대응 및 응급기관 비상연락망

번호	명칭	전화번호	비고
1	포천교육지원청	539-0000 (야) 539-0017	
2	포천시 재난종합상황실	538-2119	
3	포천경찰서	536-6112	
4	포천소방서	533-1119	
5	한전 포천지점	539-0282	
6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878-0019	
7	KT 포천지점	531-0060	
8	5군단(제2672부대)	532-0113	
9	6군단(제3169부대)	534-3169	
10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539-9472	
11	우리병원	542-0232	
12	강병원	535-2119	

■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학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안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식품 및 위험물유해물질 공급업체 등의 업체명과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 놓는다.

보안경비 관련업체 / 전기 관련업체 / 가스 관련업체 / 승강기 관련업체 / 냉난방 관련업체 / 특수시설업체 / 위험물(유해물질) 공급업체 / 식자재 공급업체 등

■ 안전 관련 MOU 체결 현황

부 문	명칭	전화번호	비고
시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031-541-9111~3	
	에스원	02-1588-3112	
	휴먼시스템	031-542-2307	
	신우환경	031-533-7748	
가스	이동가스	031-532-4827	
소방	한국소방주식회사	031-846-4219	
급식	축산물-미트빌연합사업단	031-533-6904	
	농산물-팜스코	031-544-8239	
	공산품-경기롯데	031-859-8214	
	수산물-수협중앙회단체급식사업단	032-881-4519	
	김치-청신김치연천포천영업소	031-832-4414	
보건	이동보건지소	031-538-4584	

■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이동면사무소
전파(내부)	학교내 방송	음성방송, 타종, 호루라기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1. 학교장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사고지휘관 (교감)

사고지휘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교사

교사는 학생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결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Protocol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Protocol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4. 행정실무사 :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보건교사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6. 기능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행정실 직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류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8.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9. 학생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한다.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10. 학부모/보호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기술 보유 현황

연도	전체 교직원 수		안전교육 15시간 이수 교직원수		이수율
	교원	사무직원	교원	사무직원	
2022	17	12	17	12	100%

■ 학교안전교육 주간 운영

- 교육기관은 ‘학교 안전주간’을 지정하고 동 기간 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2023년 4월 5주차 학교안전주간 운영함

* 지진대피훈련, 소방훈련 등을 통해 모의상황 연출하여 운영함

■ 장애학생 안전보호 계획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주간 운영 계획

가. 목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인권존중의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다. 방침

가. 비장애학생들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나 장점 등을 강조하여 자신들과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장애학생 학교폭력 및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라. 대상 : 전교생 및 학부모 및 교사

마. 내용

연번	내 용	실시일	대상	비고
1	학급 게시물 및 교내 현관 게시물 제작 및 부착	7월 4주	전교생	
2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3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성교육			
4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연수 실시	3월 4주	전교사	
5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성교육 연수 실시			

바. 효과

- 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
- ②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 ③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긍정적인 인성을 함양한다.
- ④ 타인의 약점에 대해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개인차를 수용한다.
- ⑤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자신들과 어울려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을 마련한다.

III. 예방활동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CCTV 설치 운영 장소

설치년도	설치 대수						장소	비 고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계		
2008			1			1	체육관 뒤	
2012			1			1	본관서쪽후면	
2018			1		6	7	예능관(음악실) 예능관(가사실) 본관중앙정면 본관동쪽정면 본관서쪽정면 체육관앞	본관동쪽정면 300만화소 그 외 500만화소
2019				1	1	2	1층복도(교장실앞) 행정실안인쇄실	교장실앞 400만화소 인쇄실 500만화소

■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1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이등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대장

기관명: 이동중학교

일련 번호	사 용 시설명	일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 목적	사용 일자	사용기간	사용 인원	사용료	결재		
		직업 (단체명)	성명 (대표자명)	연락처						계	행정 실장	교장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 (시간)	명	원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결 재	계	행정실장	교장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이동중학교장 귀하

이동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일반교실	평일 : 16:00 - 18:00 토요일 : 14:00 - 18:00 일요일,공휴일 : 09:00 - 18:00	
시청각교실,특별교실	평일 : 16:00 - 18:00 토요일 : 14:00 - 18:00 일요일,공휴일 : 09:00 - 18:00	
체육관,강당	평일 : 17:00 - 23:00 토요일 : 19:00 - 23:00 공휴일 : 19:00 - 23:00	배드민턴, 배구
운동장,주차장	평일 : 16:00 - 18:00 토요일 : 14:00 - 18:00 일요일,공휴일 : 09:00 - 18:00	일반운동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포천주민일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포천주민이 아닐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 동 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사용료의 면제, 감액 및 반환

I 전액면제

-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I 100분의 50 감액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개정 2013.6.10.>

III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V 사용료의 반환

- 가. 사용전일까지 미리 취소 : 사용료의 1/2 반환
-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 : 전액 반환
-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 시간

- 평일 : 16:20 ~ 18:00
- 토요일 : 14:00 ~ 18:00
-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 단,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이용 방법

- 이동중학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사용 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함.

3.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애플 사용 등 고성방가 행위를 극히 제한 함.
-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변상)를 하여야 함.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이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이용자는 개 등 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없음.
- 학교시설물을 이용 후 가져온 물건과 발생된 각종 오물 등은 되가져 가되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 후, 경비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학교 내에서의 모든 취사 행위를 금함.
-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함.

【별지 1】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결 재	계	행정실장	교장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이동중학교장 귀하

【별지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포천주민일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포천주민이 아닐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 동 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별표 1)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을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기
- 학교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는 차량을 저속 주행하고, 중앙 현관을 통해 행정실에 물품 배송
- 식음료 및 자재 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고 차량을 저속 주행함

■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차량 및 보행 등학교생 등)

- 학부모 차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정문 앞에서 정차 후 회차한다.
- 교내에 진입한 차량은 20km/h를 넘지 않으며 주의깊게 운전한다.
- 정문과 후문을 통해서 학생들은 등·하교가 가능하며, 후문은 일과 중에 시건 장치를 한다.
- 보행하는 학생들은 정문에서 학생 진입로를 따라서 천천히 걷는다.

■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열쇠의 종류) 열쇠의 형태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상용 열쇠 (전자카드 포함)
- 비상용 열쇠 (전자카드 포함)

(열쇠 관리장소) 일상용 열쇠는 행정실에 보관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는 숙직실에서 보관 관리한다.

(열쇠관리요령)

- 일상용 열쇠는 행정실장이 따로 지명하는 열쇠 관리자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 비상용 열쇠는 긴급사항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용 열쇠가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행정실장의 승인에 의하여 복제 할 수 있다.
 - 비상용 열쇠는 타인에게 전도 할 수 없다.
 - 비상용 열쇠는 긴급사항 발생 시 승인 없이 사용을 하되 사용 후 반드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열쇠관리부)

- 일상용 열쇠는 (서식 1) “열쇠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열쇠의 불출 반납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제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용 열쇠를 사용시는 “서식 1”에 비상으로 추가 기입하여 유지 관리한다.

(열쇠보관 및 일일사용)

- 열쇠보관함은 근무시간중에는 열쇠관리자가, 근무시간외에는 당직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열쇠는 학교 외에 어떤 곳에도 반출 할 수 없다.

(열쇠의 분실, 훼손보고) 열쇠보관관리자는 열쇠가 분실 되었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열쇠의 점검) 열쇠 총괄책임자는 정기(6월말, 12월말) 또는 수시로 열쇠의 보관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서식 1) 열쇠 관리대장 예시

교실명	일련번호	인수				교부				비고 (연락처)			
		위치	인수량	인수자	인수일	확인	교부처	용도 (일상/비상)	교부수량		수령자	교부일	확인

■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침

구분	반출 물품 목록(수량)	반출 방법	담당자	비고
급식실		해당사항 없음		
보건실	구급함(7개)	보건 교사가 직접 운송	보건교사	
과학실		해당사항 없음		
체육실		해당사항 없음		
바이애슬론 사격장	공기소총(9정)	이동파출소 도움 요청	학생안전부장	
기타				

■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 일반방송 : 주조종실(방송실, 교무실) → 교사동내 전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
- 화재방송 : 주조종실(방송실) → 교사동내 전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

■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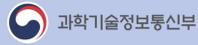
- 학생들이 교내에 있을 때에는 비상 대피를 위해서 1층 현관문(5개)을 항시 열어둔다.
-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옥상문을 열어둔다.
(단, 자살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다.)

■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QR코드를 찍으시면
"3D프린팅 안전이용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https://www.3dbank.or.kr>)
• 3D프린팅 안전교육
(<http://3d.acastar.co.kr>)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안전한 3D프린터와 소재 사용

- 1 밀폐형 3D프린터 사용하기**
- 2 친환경 소재 사용하기**

3D프린팅 작업 전

- 3 3D프린팅 안전교육 이수하기**
- 4 소재 사용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하기**
- 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프린터 설치하기**

3D프린팅 작업 중

- 6 작업공간 환기하기 (3D프린팅 작업 전·중·후)**
- 7 보호장비 착용하기 (마스크, 장갑 등)**
- 8 3D프린팅 작업 중 급적 작업공간에 머무르지 않기**

3D프린팅 작업 후

- 9 별도 공간에서 후처리하기**
- 10 후처리 공간도 작업 전·후 환기하기**

■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1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p>① 다양한 인력 활용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 지역 등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 - 학교 인근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관서 등의 협조로 순찰 강화 	
2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
<p>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출결 확인 및 결석 시 결석 원인 파악 - 방과후학교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 확인 후 하교 지도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들에게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 지도 	
3	교육 활동 안전 확보
<p>① (실내 활동) 교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질서 생활화</p> <p>② (실외 활동) 방과학교 강사가 반드시 동행하여 시선이 미치지 않는 실외 사각지대에서 학생이 활동 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놀이 및 체육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 (실외활동 자체 시간대 준수) 하루 중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14:00~16:00), 폭염 특보 및 오존 경보 발령 시, 태풍·집중호우 시,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 실외활동 자체 <p>③ (체험 활동) 학생 인솔 시, 반드시 방과후학교 강사 동행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답사를 통해 위험요소 및 현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 계획 수립 - 버스는 등록된 차량으로 인적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 - 수영 등 체험 활동 시, 사전 준비 운동 등 안전사고 예방 지도 -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 규칙 지도 철저 등 	
4	안전사고 예방
<p>① 교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전개 : 교직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지도, 사각지대 순찰</p> <p>② 고위험학생(폭력, 중독, 가출), 위기학생(부모방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파악</p> <p>③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p> <p>④ 기타 안전사고 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제공 시 식중독 예방 철저 - 전염병 발생이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기 -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 - 학교 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수정하여 비치·활용 <p>*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인근 병원, 응급처치병원 등의 기관별 전화번호, 기관별 담당자, 소재지 위치 등이 등록된 장부 비치</p>	

■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보건실 운영 계획)

가. 목적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평생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기본방침

- 1) 보건실 방문학생 대상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 2) 연간계획을 세워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평가를 통해 반성 및 보완하여 다음해 계획에 반영
- 3) 교직원,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로 학교보건실 운영의 극대화

다. 운영계획

- 1) 보건교육과 보건서비스를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 2) 침상 안정 시에는 시간과 이유가 명확하여야 하고 담임 또는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락한 후 안정시킨다.
- 3) 보건교사 부재 시에는 교무실에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환자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 책임자	부 책임자
보건교사	보건수업 시: 해당학급 담임교사 보건교사 부재 시: 학생안전부장

* 부 책임자의 직무 : 보건교사가 출장, 연가, 조퇴 등의 사유로 부재 시

- 1) 아동의 응급처치 및 약품사용 관리(내복약은 투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2) 보건실의 전기 및 화기단속, 시건장치
- 3) 보건일지 보조장부 기록

라. 구급약품의 관리

- 1) 약품의 사용은 매뉴얼을 기준으로 보건교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 유의하여 투여한다.
- 2) 약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투여한다.
- 3)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응급처치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과다사용은 제한한다.
- 4) 투약을 제한하는 경우 →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할 것임
 - 공복 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경우(위장장애 시 제외)
 - 복용간격이 짧은 경우
 - 약품 매뉴얼 내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병원진찰이 긴급한 경우
 - 침상휴식으로 호전될 것 같은 경우
 - 상습 복용을 하는 경우
 - 기타 보건교사의 상담과 지도로 충분한 경우
- 5) 약품은 반드시 **본인(교사, 학생 모두 해당)에게 직접 투여**한다.

마. 보건실 입실 규정

- 1) 입실 절차
 - 요양을 원하는 학생은 보건실을 방문하여 보건교사와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 입실 대상자로 판정되면 보건실 요양의뢰서를 발부한다.
 - 발부받은 입실증을 가지고 교과담당 및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입실증을 보건실로 제출한다.
- 2) 수업시간에 보건실 입실을 의뢰하실 때는 서면으로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실 요 양 의 료 서	병의원 진료 필요 확인서
제 학년 반 번 성 명 : 증 상 : 일 시 : 2023년 월 일 담 임 : (인) 교과 담당 : (인) (교시, 과목명 :) 이 수업시간에 해당학생을 보건실에서 쉬도록 허락하신다면(요양 의뢰), 위 해당란에 싸인하셔서 학생편에 돌려 보건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제 학년 반 번 성 명 : 보건실 입실시간 : 시 분 증 상 : 위 학생은 위와 같은 증상 때문에 조퇴 및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얼른() or 오늘 중() 필요). 진료결과가 나오면, 보건실로도 결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보건교사 (인) 담임교사 귀하
보건교사 귀하	담임교사 귀하

3) 입실 대상자

- 질환이나 사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신체 상태인 학생
- 응급 질환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처리가 미완된 학생
-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학생
-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건교사가 판단하거나 타 교사로부터 의뢰된 학생

사. 입실 학생에 대한 출석

- 1) 보건교사의 확인이 있는 학생은 1시간에 한해서 출석인정 처리 한다.

□ 학교보건교육 실시 계획

가. 목 표

환경오염은 물론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행위의 실천을 통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심신이 건강한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나. 기본 방침

- 1) 연중 보건교육자료를 발행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2) 지속적인 건강자료 게시 및 건강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가정에 까지 교육이 미치도록 한다.
- 3) 다각적인 경로와 효율적인 보건교육방법의 모색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한다.
- 4) 수요자 요구에 맞춘 개별적인 보건 교육을 제공한다.
- 5) 관련 교과와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인다.
- 6) 교과교사의 요청에 따른 교실 수업을 실시한다.

다. 운영 방침

-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 2)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3) 성교육 - 학급당 15시간 이상, 약물오남용교육 - 학급당 20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학급당 1시간 이상 (2학년은 이론과 실습 2시간 이상) 실시한다.

4) 관련 교과 단원에서 보건교육 지도요소가 다루어질 경우 1차시분의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성교육 영역

가) 신체·심리발달과 성 건강: 사춘기변화, 임신, 분만

나) 인간관계와 성 심리: 성가치관, 이성교제, 성역할

다)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 양성평등, 가정에서의 역할분담, 진로선택에서의 양성평등

라) 성문화 및 성윤리: 바람직한 이성교제, 성병과 에이즈예방,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낙태

6) 기타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가) 교직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 연수: 연 2시간 이상

나) 학생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연 2시간 이상

다) 학부모 성폭력예방 연수: 연간 1시간 이상

7) 성교육 담당자 지정 운영: 보건교사

8) 기타 성 상담활동, 성교육 관련 예산확보, 성폭력 사안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라. 운영계획

내용	시기 및 시간	대상	비고
요양호자 선별 및 상담	3월 초 선별, 연중 상담	학생	건강관리조사서로 학생선별 주기적 상담관리
성교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 포함)	연중 20시간 이상	학생	연간지도계획 참조
	연중 4시간 이상	교직원	
	연중 1시간 이상	학부모	
양성평등교육	4월	학생	보건교육, 포스터그리기활동
	3월	학부모	양성평등 연수(유인물)
음주, 흡연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연중 10시간 이상	학생	보건교육(창체, 조·총례시간) 보건소식지 발송, 홈페이지 탑재 흡연 실태조사
	연중 1시간 이상	교사	3월 연수: 흡연예방, 흡연 실태조사
	연중 6시간 이상	학부모	3월 연수: 흡연예방 보건소식지 발송, 홈페이지 탑재
계절별 감염성·유행성 질환 예방교육	연중 수시	학생 학부모	보건교육 보건소식지 발송 홈페이지 탑재
비만 및 저체중 학생 선별 및 교육 관리	6월 중 선별, 연중 상담 (건강검사 결과 참고)	해당학생 학부모	보건교육 보건소식지 발송 건강 상담 및 관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2시간 이상	학생	보건교육
	3 ~ 4시간	교직원	교직원 연수실시 (의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건강 상담/성 관련 상담	연중	희망자	학교 홈페이지/보건실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연중	학생 학부모	보건교육 보건소식지 발송 홈페이지 탑재

■ 학교안전문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

- 대부분이 체육 활동으로 인해서 타박상 및 인대손상, 골절이므로 준비 운동 철저
- 신체 활동 시 주제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적절한 장소에서 실시

■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 학교안전위험성 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현황

1. 예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현황

- 1) 건물과 운동장 : 주변환경, 놀이터, 경비(감시), 건물 외부 점검 결과 진입로 부근 위험 가능성 있음
- 2) 건물 내부 : 교무실/행정실과 중앙 로비, 복도, 화장실, 화장실, 일반 교실, 특별실, 체육관, 방충실, 음악실, 휴게실, 교내식당 등 점검 결과 교실 내 칠판, 체육관과 교내식당 위험 가능성 있음
- 3) 소통(커뮤니케이션) : 양방향 소통커뮤니케이션, 인터폰, 비상벨 점검 결과 이상 없음
- 4) 시설물 유지보수와 보안(경비) : 점검 결과 이상 없음

2. 재난 위험성 진단 결과 현황

위험요인 <A>	요인별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점수 <E=B+C+D>	우선 순위 (위험성 정) <F>
	발생가능성 (발생빈도) 	피해심각성 (위약성) <C>	대응 준비시간 <D>		
화재	매우낮음 → 1점 낮음 → 2점 높음 → 3점 매우높음 → 4점	경미한 피해 → 1점 제한적 피해 → 2점 중대한 피해 → 3점 재앙적 피해 → 4점	24시간 이상 → 1점 12~24시간 → 2점 6~12 시간 → 3점 즉시 → 4점	12	1
폭염	4	3	2	9	2
식중독	1	3	4	8	3

3.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진단 결과 현황

구분	실태 점검
낙상 사고	바닥재, 조명, 경사로, 눈이나 빙판, 청소 방법, 체육관, 사무공간, 건물 내 계단과 복도, 교실 등 점검 결과 체육관 바닥 이상 있어 교체함.
손 끼임 사고	문에 손이나 손가락 끼임 현상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학교 및 학교주변 교통사고	자녀 등하교 학부모 차량과 교직원 차량의 출입, 학교 출입지점의 차량 주·정차, 물류차량, 공급계약 업체 차량, 교직원 차량의 교내 주차, 차량의 교내 무단 진입, 보행로 등 점검 결과 보행로 부근 이외에는 이상 없음
휴식·점심시간 사고	지도감독, 날씨 상황 등 점검 결과 이상 없음
놀이공간 사고	관리, 부지 위치, 설계, 바닥재 등 점검 결과 이상 없음
교내 폭력과 경비 관련 사고	무단 침입자 접근, 비상벨, 방문자의 폭력 등 점검 결과 이에 대한 대비책 취함.
체육활동 사고	통제 가능 적정인원, 학생 운동능력 고려, 복장, 체육교사 지식과 경험, 안전장비, 체육시설, 비상시 대응역량 등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리 규정 준수, 수련시설 특성 고려, 참여규모, 학생의 행동, 이동 중 휴식, 음식 섭취, 차량운행 등 점검 결과 차량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상 없음

□ 2023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및 대책 반영

1. 예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대책

1) 건물 내부

- 체육관 : 체육관 바닥 3mm~5mm 높낮이가 불균형함. 학생들이 뛰면서 다칠 위험 가능성 있음
→ 교육청 지원을 통한 바닥 교체 고려
- 교내식당 : 2015년 가스 배관 누수 있었음 → 설비 교체 및 배관 도색 작업함. 이후 수시로 가스 배관 체크하고 있음

2. 재난 위험성 진단 결과 대책

1) 화재

- ① 1년 단위로 가스 점검업체에 의뢰함. '가스 감지기' 이용해 수시로 화재 위험 가능성 있는 곳 점검하고 있음
- ② 과학실 내 화학물질 수시로 안전 점검하고 있음. 보관구역(시료품, 유해(위험/화학)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식의 거버넌스 치하고 있음
- ③ 화재대비훈련 계획 수립

○ (훈련의 목적) 학교 및 주변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대응역량을 개발한다.

- (훈련의 목표) 화재대피 역량 강화 및 훈련 참여자 임무·역할 검증
- 훈련계획 수립 시 사항
 - 훈련상황 : 2층 과학실 전열기 과열에 의해 수업 중 화재 발생
 - 훈련장소 : 과학실이 위치한 교사동 전체
 - 참가대상 : 전 교직원 및 학생
 - 훈련유형 : 현장훈련

2) 폭염

① 폭염대비훈련 계획 수립

- (훈련의 목적) 통상 30°C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에 의한 열사병,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 보호
- (훈련의 목표) 폭염대응 역량 강화 및 훈련 참여자 임무·역할 검증
- 훈련계획 수립 시 사항
 - 훈련상황 : 연이은 불볕더위에 의한 폭염 경보의 발령
 - 훈련장소 : 교내 회의실
 - 참가대상 : 교장, 교감, 행정실장, 안전부장교사, 담당교사, 행정실 직원 등
 - 훈련유형 : 토론기반훈련
- * 훈련 진행자는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훈련 내용들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실시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학교의 폭염 대응절차와 행동수칙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3) 식중독

① 식중독대비훈련 계획 수립

- (훈련의 목적) 식품섭취로 인해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인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보호
- (훈련의 목표) 식중독 대응 역량 강화 및 대응 단계별 훈련 참여자 임무·역할 검증
- 훈련계획 수립 시 사항
 - 훈련상황 :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 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됨
 - 훈련장소 : 교내 회의실
 - 참가대상 : 교장, 교감, 행정실장, 안전부장교사, 담당교사 등
 - 훈련유형 : 토론기반훈련

3.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진단 결과 대책

구분	개선 방안
낙상 사고	체육관 바닥 3mm~5mm 높낮이가 불균형함. 학생들이 뛰면서 다칠 위험 가능성 있음 → 교육청 지원을 통한 바닥 교체 고려
학교 및 학교주변 교통사고	2017년도 보행로 공사 중 은행나무 손상됨. 2018년에 은행나무에 삭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위험 가능성 있음 → 관할 면사무소 의뢰를 통한 은행나무 제거 고려
교내 폭력과 경비 관련 사고	① 경찰관/배움터지킴이/관리실등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요함 ② 무단침입대응훈련 계획 수립 (부록1 참조)
현장체험학습 사고	현장체험활동 버스사고훈련 계획 수립(부록2 참조)

- 학교 비상대책반 구성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성 강조
- 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 강구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발생시 대응 절차 교육

■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 추진배경 및 근거
 - 생활 속 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대두
 - 체험 중심의 훈련기회 부족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인프라 마련 시급
- 추진목적
 - 안전생활이 습관화 될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 능력 습득
 - 분야별 사고발생 사례, 체험훈련을 통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기회 제공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력 배양
- 추진계획
 - 기본방향
 -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관행적 형식적·이론적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의 재난안전교육·훈련 실시
 -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체험활동 선정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교육 협조체제 구축
 - 세부 추진 내용

순서	일시	교육 기관	안전 영역	교육 내용
1	2023년 7월 중	경기도교통연수원	교통안전	교통 상황별 교통안전 교육
2	2023년 5월 중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예방	화재 상황별 소화 방법 안전교육
3		경기도포천소방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체험교육
3			소방안전	소화기, 소화전 사용 체험교육
4	이동중 학생안전부	안전 문화 행사		전교생을 상대로 안전 O X 퀴즈 대회
5				교내에서 안전이 취약한 곳 사진 찍어서 제출하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1. 7대 안전교육 학년별 교육 시간 및 횟수

(단위: 차시)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시간	12	11	8	10	6	2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교육시간은 교육과정의 차시를 의미하며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을 입력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0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0시간÷10학급 = 10시간)
-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분산하여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횟수를 입력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회÷10학급 = 1회)

2. 7대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내용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 실습 및 체육, 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4. 실존, 유괴, 미야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 대처방법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1. 환경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 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 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 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영상·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직장인학 또는 직업체험)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3. 2023학년도 학교안전계획 교과별 연간 지도계획

유형	필수 시수	교과 및 대체 연계 학습 내용	
		1학기	2학기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야사고 방지 (학기당 2회 이상)	10	1학년	<기술가정>기술과 사회변화의 안전사고유형 <체육>신체활동안전 <체육>시설안전 <체육>경기 상황에서의 다양한 부상 <창체>스포츠클럽 안전사고 예방교육 <체육>신체활동안전-2차시 <체육>시설안전 <창체>마당바위계 사건 안전교육 <창체>방학 안전사고 예방교육
		2학년	<기술가정>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방법 <기술가정>수송 수단별 사고원인과 예방 <체육>신체활동안전-2차시 <창체>방학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술가정>교통안전사고예방 위한아이디어 <기술가정>전기안전 및 올바른 사용법 <체육>신체활동안전-2차시 <체육>신체활동안전-2차시 <창체>방학 안전사고 예방교육
		3학년	<체육>신체활동안전-2차시 <체육>시설안전 <창체>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창체>마당바위계 사건 안전교육 <창체>방학 안전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자동차 안전 대중교통안전 (학기당 3회 이상)	10	1학년	<기술가정>안전사고유형 및 대처방안 <범교과>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교육-2차시 <창체>여름방학 교통안전교육 <기술가정>안전사고유형 및 대처방안-2차시 <창체>현장체험학습 교통안전교육-2차시 <창체>방학, 명절연휴 교통안전교육-2차시
		2학년	<기술가정>수송 기술과 교통안전 <범교과>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교육-2차시 <창체>여름방학 교통안전교육 <기술가정>안전사고유형 및 대처방안-2차시 <창체>현장체험학습 교통안전교육-2차시 <창체>방학, 명절연휴 교통안전교육-2차시
		3학년	<체육>안전사고유형 및 대처방안 <범교과>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교육-2차시 <창체>여름방학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생명존중(4차시) (학기당 2회 이상)	10	1학년	<기술가정>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2차시 <도덕>도덕적인 삶-2차시 <사회>사회화와 청소년기의 특징-2차시 <기술가정>성적의사 결정권-2차시 <창체>학교폭력예방교육 <창체>생명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2학년	<기술가정>가정폭력 원인분석 및 사례조사 <기술가정>생명 기술과 생명존중-2차시 <기술가정>가족의사소통과 갈등 관리-2차시 <보건>성폭력예방교육-2차시 <기술가정>성적의사 결정권-2차시 <창체>학교폭력예방교육 <창체>생명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3학년	<정보>정보윤리(저작권,개인정보보호) <정보>사이버 폭력방지 <보건>성폭력예방교육-3차시 <보건>성적의사 결정권-3차시 <창체>학교폭력예방교육 <창체>생명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약물중독 사이버중독 (학기당 2회 이상)	10	1학년	<기술가정>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교육-2차시 <기술가정>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교육-2차시 <기술가정>청소년을위한 약물중독예방교육 <창체>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술가정>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교육-2차시 <기술가정>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교육-2차시 <기술가정>청소년을위한 약물중독예방교육 <범교과>인터넷중독 예방교육
		2학년	<기술가정>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보건>흡연예방교육-2차시 <보건>약물오남용방지교육-2차시 <창체>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술가정>현대의 미디어와 이동통신 <기술가정>미디어와 이동통신의 올바른사용 <보건>흡연예방교육-2차시 <보건>약물오남용방지교육 <범교과>인터넷중독 예방교육
		3학년	<도덕>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 <정보>정보윤리(사이버윤리,인터넷중독)-2차시 <정보>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란 <정보>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법-2차시 <창체>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보건>흡연예방교육-2차시 <보건>약물오남용방지교육-2차시 <범교과>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 (학기당 2회 이상)	6	1학년	<과학>지구계 지권의 변화 <사회>기후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창체>전염병예방교육(코로나19)대처방안 <기술가정>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예방 <범교과>재난대피훈련 <범교과>화재대피훈련 <범교과>지진대피훈련
		2학년	<창체>전염병예방교육(코로나19)대처방안 <기술가정>전기사용 및 화재안전교육-2차시 <범교과>재난대피훈련 <범교과>화재대피훈련 <범교과>지진대피훈련

		3학년	<과학>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과학>기권과 날씨 <창체>전염병예방교육(코로나19)대처방안	<법교과>재난대피훈련 <법교과>화재대비훈련 <법교과>지진대피훈련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 직업안전 (학기당 1회 이상)	3	1학년	<기술가정>실습 시 작업안전 <기술가정>산업재해와 작업안전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예방	<기술가정>실습 과 작업안전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예방
		2학년	<기술가정>실습 시 작업안전 <기술가정>산업재해와 작업안전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예방	<기술가정>실습 과 작업안전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예방
		3학년	<미술>실습 시 작업안전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예방	<미술>실습 과 작업안전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예방
응급처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학기당 1회 이상)	2	1학년	<체육>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체육>응급처치교육
		2학년	<보건>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건>응급처치교육
		3학년	<보건>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건>응급처치교육

7대영역 총 차시	1학년	2학년	3학년
기술가정	23	23	0
체육	8	5	9
창의적 체험활동	12	10	13
도덕	3	0	0
사회	3	0	0
보건	0	9	12
정보	0	0	7
과학	3	2	4
미술	0	0	2
법교과	6	6	6
계	55	52	49

4. 2023학년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계획

① 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체험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운영하기 위함

② 방침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7개 분야로 실시
- 조회시간 및 짝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담임이 교육
- 운영기간은 2023.03 ~ 2024.02 까지로 운영한다.
- 운영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교육청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세부 추진 계획

	요일					비고
	월	화	수	목	금	
시간	09:00- 09:05	09:00- 09:05	09:00- 09:05	09:00- 09:05	09:00- 09:05	매일 실시(조회시간)

④ 기대효과

- 학생들의 위기대처능력이 강화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조회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므로 특별히 시간을 따로 계획할 필요가 없음
-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 학교 안전조직, 학생회 조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다.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학교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다.

IV. 대비활동

* **도교육청 지역계획을 포함하여 학교 전략수립 방향과 일치하게 작성**

■ **재난대응훈련계획의 수립/배포와 실제훈련**

가.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②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③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④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⑤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⑥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서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나. 지진 및 쓰나미

(1) 지진 및 쓰나미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

- ① 재난 경보 접수 및 전파(상황반)
 - 전원 차단(강의실) 및 출입문을 개방한다.
 - 강의실 내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② 대피 지시(1차 지진 파동 종료 시)
 -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 출입문 쪽 학생부터 순서대로 복도에 정렬한다.
 - 교사 통제하 순서에 지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 다른 강의실 학생과 섞이지 않도록 대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피
 - 대피시 앞사람(학급) 추월 금지, 침착 및 질서 유지
 - 방석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
 - 환자와 장애학생 안전 대피 우선 지원
 - 안내교사는 학생 대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 장소로 이동한다.
 - 응급구조반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③ 대피 장소에 도착시 학생 인원 파악 및 라디오 방송 청취
- ④ 소방 및 응급 복구 활동(소화반, 응급구조반)
- ⑤ 쓰나미 대피 지시
 - 시간 충분 시 : 지정된 대피장소(산, 언덕 등)로 대피한다.
 -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편성된 대피조는 이동하는 동안 손을 맞잡고 지정된 대피로를 따라 신속히 이동
 - 상황 급박 시 : 옥상(건물 옥상)으로 대피
 - 비상구 및 계단을 거쳐 신속히 이동
 - 대피 장소에 도착 시 학생 인원 파악
- ⑥ 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상황반)
- ⑦ 대피 훈련 종료 후 안전에 유의하여 강의실로 이동(안내·유도반)

(2) 지진발생시 행동 요령



등·하교 시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주요건에서는 빨리 불교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안전히 출퇴근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일단 발진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안전히 출퇴근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먼저부터 지진이 발생
할 때를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주요건에서는 지진이 있을 경우
안전히 대피합니다.

다. 포격·공습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

포격·공습이 진행 중인 경우	포격·공습이 중단되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을 복도로 정렬시킨다. · 교사가 낮은 자세로 인솔하면서 지하 또는 1층으로 안내한다. · 대피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지정된 대피시설 또는 장소로 안내한다.

- ① 경보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하파고 학생 대피를 지시한다.
- ② 위기상황을 인지한 즉시 학생을 대피시킨다.
- ③ 학생대피 완료 후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심리 안정 교육을 실시한다.
- ④ 직접적인 피해 중단 시 학생 귀가 조치하며 학부모에게 SMS등을 이용하여 알린다.

■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 비치
-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
- 비상배낭의 구성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피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비장소, 재난대응기술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지압봉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V.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무단(불법)침입/인질극

1. 목적

본 부속서는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내에서 폭력을 휘둘러 것으로 보이는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만나거나 보게 된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질극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불법침입 또는 인질극 발생으로 인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 사건현장에 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경찰의 지시를 따르고 이들과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책임

1)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또는 행정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또는 행정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라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만일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이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소지한 무기(총기) 또는 (소지품)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사고지휘관/학교장 또는 경찰(112)에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은 교육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상황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2) 인질극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잡혀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질(학생)의 안전이다. 교직원 등은 인질들이 학교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여들지 않는다.
-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이나 학교보안관(이들에게 인질극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에게 인질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인질범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이들과 연쟁을 벌인다거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으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4) 교사와 직원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2017. 1 배포예정, 교육부

V. 복구 활동 계획

■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 위기 개입 순서

- 가.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 내 대책회의를 소집
- 나. 사안 파악 및 보고
- 다. 위기상담 준비 및 개입방안 논의
- 라. 위기 지원 기관 및 절차 확인
- 마.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위기 상황에 개입
- 바. 위기 상태에 따라 외부 전문의료기관에 연계
- 사. 위기 개입 과정 및 결과 검토회의
- 아. 장기적 추가지원 계획 수립(추수 상담 등)

☐ 위기 개입 요청

- Wee클래스 및 Wee센터는 위기별 심리지원, 지속적인 추수상담을 지원한다.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 개입 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발행한 메뉴얼 참고 [매체를 활용한 일상성 회복 가이드-PTSD예방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포천시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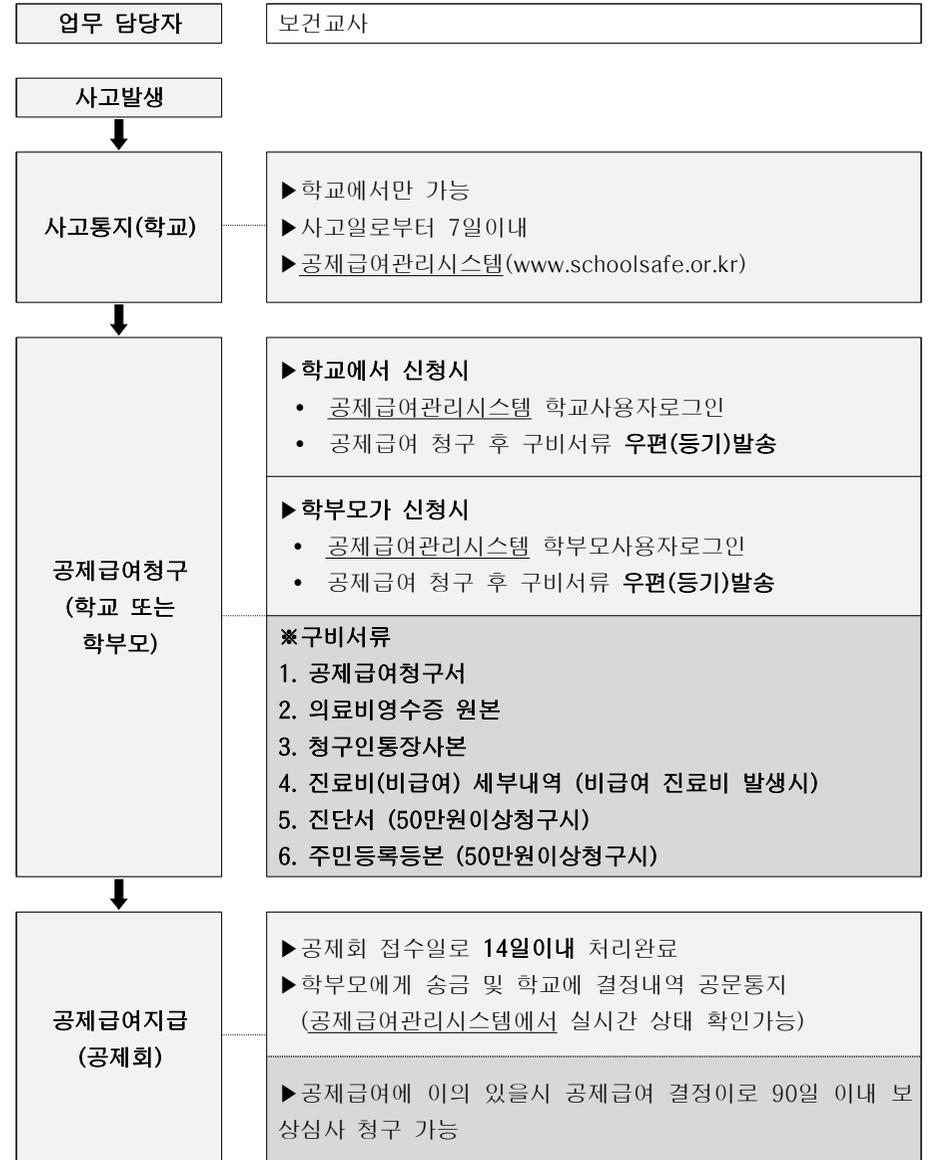
- 상담센터: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포천가족성상담센터, 미래인지발달교육센터
- 의료건강서비스: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포천의료원
- 사회복지기관: 포천시 희망복지센터, 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경기북부 아동보호센터 굿네이버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 포천경찰서

■ 시설 복구

해당교육청의 재난시설 복구 관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피해보상의 청구 등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VI. 안전 점검

- 계절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취약 시설 및 월별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 소화시설, 위험물 보관소, 전기·가스시설, 실험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 계절별, 월별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 황사, 폭염, 폭설, 화재 등)에 대비한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등 안전상태 점검 실시
 - ※ 기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관, 급식시설, 실험실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실시

【붙임】

이동중학교 자체 재난안전점검

점검일 : 2023. . . .
 점검자 : (서명)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향후 조치계획	
		점검대상	상태			
			정상	요정비	요정비 내용	
소방	○ 소화기					
	- 규정에 의한 소화기가 비치되었는가?					
	· 각 층마다 : 보행거리 소형 20m, 대형 30m,					
	· 각 실 : 바닥면적 33㎡ 이상 의무설치					
	- 소화기가 정 위치에 있는가?					
	- 소화기의 충압 상태 압력계가 정상인가?					
	- 소화기의 소화약이 굳지 않았는가?					
	○ 소화전					
	- 옥내소화전함에 호수, 관창, 노즐이 있는가?					
	- 옥내소화전함의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옥외소화전의 방수구 뚜껑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가?					
	○ 기타					
	-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비상 방송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비상구 및 피난유도 안내판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가?						
- 피난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설치된 방화셔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교내에 쓰레기 집하장 등 인화성 물질 등이 제거되었는가?						
전기	○ 전기설비					
	- 교내 가로등에 누전이 없는가?					
	- EPS(electric power supply) 실에 분전반에 이물질 제거하였는가?					
	-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수배전반실 등에 이물질을 제거하였는가?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향후 조치계획	
		점검대상	상태			요정비 내용
			정상	요정비		
	○ 기타					
	- 천정의 형광등 및 갓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 천정의 시스템 냉·온풍기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 1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전원연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전선의 피복 상태(그을림, 색변화)가 정상인가?					
	- 전원 콘센트의 먼지는 제거되었는가?					
	- 노후된 전기기기 상태(그을림 등)가 정상인가?					
	- 사무실의 개인 전열기기는 모두 제거되었는가?					
	- 일일보안점검시 전열기기(커피포트 등) 안전점검과 콘센트를 제거하고 있는가?					
	- 사용하지 않는 실의 전기는 차단하였는가?					
	- 노출된 전기선의 꺾임과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가?					
	가스	- 가스배관의 부식은 없는가?				
- 가스호스 배관이 접힌 곳이 없는가?						
- 가스누설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가스 배관 및 접합부에서 가스 누설은 없는가?						
	○ 내부시설					
	-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있는가?					
	- 내부 벽면에 균열이 있는가?					
	- 내부 벽면 계시물(그림, 게시판 등)의 고정 상태가 정상인가?					
	- 각 층 바닥에 균열이 있는가?					
	- 계단 난간의 상태(난간대 훼손, 날카로운 부분 돌출 여부) 정상인가?					
	- 창호의 부착 및 여닫이 상태가 정상인가(레일탈선)?					
	- 강화유리 문 경첩(힌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각종 문의 경첩 부착상태가 정상인가?					
	○ 외부시설					
	- 외부 벽면에 균열이 없는가?					
	- 외부에 부착한 현수막 및 게시물들의 부착 상태가 정상인가?					
	- 건물 흡통이 고정 상태가 정상인가?					
	- 건물 흡통에 막힘이 없는가?					
	- 담장의 기초가 침하되었거나 균열이 있는가?					
	- 담장 휨스의 고정용 볼트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었는가?					
	- 석축 및 옹벽의 배수공에 막힘이 없는가?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향후 조치계획	
		점검대상	상태			요정비 내용
			정상	요정비		
	- 석축 및 옹벽의 균열 및 파손, 배부름이 없는가?					
	- 맨홀뚜껑(전기,통신,우수, 우수 등)이 정상적으로 닫혀있는가?					
	- 배수로의 뚜껑(스틸그레이팅 등)은 정상적으로 닫혀있는가?					
	- 교문 기둥 및 문짝의 상태가 정상인가?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유류, 가스보관소 등)					
	- 불필요한 가연물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차광 및 환기 설비는 이상이 없는가?					
	- 용기의 전도 및 배관의 충격, 마찰 또는 가열 위험성은 없는가?					
	○ 체육 및 놀이기구					
	- 체육기구 및 놀이기구의 고정상태가 정상인가?					
- 체육기구 및 놀이기구에 마모, 부식,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통학로	- 학생 통학로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가?					
정기 위탁 안전 점검	- 매회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결과 요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는가?					
	- 매회 위탁용역업체의 전기안전점검 결과 요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는가?					
	- 매월 위탁용역업체의 소방안전점검 결과 요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는가?					
점검결과 종합의견						